

서울특별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523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6년 2월 9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국민권익위원회 「지방의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」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」 보조금 교부 근거법령을 반영하기 위하여 해당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보조금 교부 근거 법령 수정(안 제3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

나. 예산조치 : 협의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
다. 협의사항

(1) 창의규제담당관(규제심사): 규제없음

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

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원안동의

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평가제외

(5) 규제개선담당관(공공갈등진단): 갈등사항 없음

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없음

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 검토의견: 해당없음

라. 기타

(1) 입법예고 (2025. 11. 13. ~ 12. 3.) 결과: 의견없음

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

※ 작성자 :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박기범 (☎ 2133 - 6636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 중 “의정회는”을 “의정회의”로 한다.

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서울특별시장은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 및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 중 “처분은 공익법인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제13조”를 “처분은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3조”로 한다.

제8조 중 “범위안”을 “범위 안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구성 및 설립운영) ①·② (생 략)</p> <p>③ <u>의정회는</u> 설립, 육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	<p>제2조(구성 및 설립운영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의정회의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3조(사업과 보조금의 교부) ① (생 략)</p> <p>② <u>서울특별시장은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3조(사업과 보조금의 교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서울특별시장은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 및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5조(잔여재산의 귀속) 의정회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처분은 <u>공익법인의설립·운영에 관한법률 제13조</u> 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	<p>제5조(잔여재산의 귀속) ----- ----- 처분은 「<u>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</u>」 제13조 ----- -----.</p>
<p>제8조(운영규정)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의정회 정관이 정하는 <u>범위안</u>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의정회 회장이 따로 정한다.</p>	<p>제8조(운영규정) ----- ----- ----- <u>범위 안</u> ----- ----- -----.</p>

서울특별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비용발생 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에 해당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

4. 작성자

-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박기범 사무관 (2133 - 6636)